

신체장애 등급 및 장애평가

〈지난호에 이어〉

코의 장애

장애가 후각상실 또는 코로 숨쉬기가 곤란한 경우 제12급, 후각감퇴인 경우 제14급을 각각 인정한다.

1. 장애등급표

장애 등급		해 설
제9급	5항	코가 결손 되어 그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

- (1) “코의 결손”이라 함은 코 연골부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잃은 경우를 말한다.
- (2) “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”이라 함은 코로 숨쉬기가 곤란한 자 또는 후각 상실자를 말한다.
- (3) 코의 결손이 단순한 외부의 흉터정도인 경우에는 남자는 제14급, 여자는 제12급을 인정한다.
- (4) 코의 기능 장애만 남은 경우에는 그 기능

입의 장애

가. 장애등급표

[장애 등급표 참조]

나. 말하는 기능의 장애

- (1) “말하는 기능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잃은 사람”이라 함은 구순음·치설음·구개음·후두음 중 3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게 된 자를 말한다.

〈장애등급표〉

장애등급		해 설
제 1 급	2 항	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모두 영구적으로 완전히 잃은 사람
제 3 급	2 항	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잃은 사람
제 4 급	2 항	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
제 6 급	2 항	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
제 9 급	6 항	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
제 10 급	2 항	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
	3 항	14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 보철을 한 사람
제 11 급	10 항	10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 보철을 한 사람
제 12 급	3 항	7개 이상이 치아에 대하여 치과 보철을 한 사람
제 13 급	4 항	5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 보철을 한 사람
제 14 급	2 항	3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 보철을 한 사람

- (2) “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”이라 함은 (1)의 규정에 의한 4종의 어음 중 2종의 발음을 할 수 없는 자 또는 철음 기증의 장애로 인하여 언어만으로는 의사소통을 할 수 없게 된 자를 말한다.
- (3) “말하는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”이라 함은 (1)의 규정에 의한 어음중 1종의 발음을 할 수 없는 자를 말한다.

다. 음식을 씹는 기능의 장애

- (1) 음식을 씹는 기능의 장애는 상하교합(咬合)과 배열상태 및 아래턱의 개폐운동 등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.
- (2) “음식을 씹는 기능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잃은 사람”이라 함은 유동식(流動食) 이외에는 섭취할 수 없는 자를 말한다.
- (3) “음식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”이라 함은 이음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음식물 이외에는 섭취할 수 없는 자를 말한다.
- (4) “음식을 씹는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”이라 함은 고형식(固形食)을 섭취할 수 있으나 이에 제한이 있어서 음식을 씹는 기능이 불충분하게 된 자를 말한다.

라. 치아의 장애

- (1) “치아보철(裸綴)을 한 사람”이라 함은 망실 또는 뚜렷하게 결손된 치아에 대한 보철을 한 자를 말한다.
- (2) 유상의치(有床義齒) 또는 가교(架橋)의치 등을 보철한 경우의 지대관 또는 구(鉤)의 장착한 치아와 포스트·인레이만을 하게 된 치아는 보철한 치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
- (3) 망실된 치아가 크거나 치아와 치아사이의 간격으로 인하여 망실된 치아의 수와 의치의 치아의 수가 다른 경우에는 망실된 치아의 수에 따라 장애등급을 결정한다.

마. 준용등급 결정

- (1) 식도의 협착·혀의 이상·인후지배신경의 마비 등으로 생기는 연하(嚥下)장애에 대하여는 당해 장애의 정도에 따라 음식물을 씹는 기능의 장애등급을 인정한다.
- (2) 미각(味覺)상실
- (가) 두부외상 기타 턱주위 조직의 손상을 혀와 손상으로 생긴 미각상실에 대하여는 제12급을 인정한다.
- (나) 미각장애는 테스트페퍼와 각종 약물에 의한 검사결과가 전부 무반응일 경우에만 미각상실로 인정하고, 그 정도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장애급여의 대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.
- (다) 미각 장애에 대하여는 요양이 종료되는 6월이 경과된 후 등급을 결정한다.
- (3) 신체장애등급표에 조합등급으로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음식을 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의 장애에 대하여는 각각의 장애가 해당되는 등급에 따라 조정의 방법에 의하여 준용등급을 결정한다.

발가락의 장애

- 가. 장애등급(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관련)
[장애등급 참조]

장해 등급	장 해 내 용
제 5 급	6.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
제 7 급	11. 두 발의 발가락이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
제 8 급	10. 한 발의 5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
제 9 급	12.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3. 한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
제 10 급	10. 한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
제 11 급	8.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
제 12 급	10. 한 발의 둘째 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 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가운데 발가락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1. 한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
제 13 급	10. 한 발의 가운데 발가락 이하의 1개 발가락 또는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1. 한발의 둘째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 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가운데 발가락 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
제 14 급	8. 한 발의 가운데 발가락 이하의 1개 또는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

나. 해설

- (1) “발가락을 잃은 사람”이라 함은 발가락의 전부를 잃은 자를 말한다.
- (2) “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”이라 함은 엄지발가락에 있어서는 말전골의 2분의 1이상, 기타의 발가락에 있어서는 원위지절 간관절(말관절) 이상을 잃은 자 또는 엄지발가락과 둘째 발가락에 있어서는 중족지절관절 또는 근위지절간관절(제1지관절, 엄지발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)의 운동가능영역이 정상운동 가능 범위의 2분의 1이상으로 제한된 자 또는 가운데 발가락·넷째 발가락·새끼 발가락에 있어서는 완전장식된 자를 말한다.

다. 준용등급 결정

- (1) 발가락을 기부(발가락이 붙어 있는 곳)에서 잃

은 자는 “발가락을 잃은 사람”으로 인정한다.

- (2) 한 발의 발가락에 신체장해등급표에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결손장해가 남은 경우
- (3) 한 발의 어느 발가락에 결손장해와 같은 다른 발가락에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

라. 한 다리에 장해가 있던 자가 다시 다른 다리에 장해가 남은 경우

한 다리에 장해가 있던 자가 다시 다른 다리에 장해가 남았거나 같은 다리에 장해의 정도를 가중하고 다른 다리에도 장해가 남아 다음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합등급으로 인정하여 가중의 경우에 준한다.

- (1)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은 제5급
- (2)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은 제7급 

〈다음호에 계속〉